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③ 등급외 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위 2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등급외 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시설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